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당금”이라는 용어를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채당금) 지급 대상을 재직 근로자로부터 확대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불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채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재직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 등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5.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채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를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으로, “임금등(이하 “채당금”이라 한다)”를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를 “재정상황, 근로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따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급대상 근로자)”를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이하 “일반채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신청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급대상 재직 근로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2. 해당 사업주와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할

것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할 것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할 것

제8조제1항 중 “일반채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액채당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를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결등을 받았을 것”을 “판결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해당 근로자

가 퇴직한 날

나.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 제9조의 제목 “(채당금의 청구와 지급)”을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에 따라 채당금”을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채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0조의 제목 “(파산선고등 채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을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채당금”을 각각 “도산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채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를 “산재보험료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채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당금수급계좌(이하 “채당금수급계좌”라 한다)”를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채당금”을 “대지급금”으로, “채당금수급계좌로”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당금을 채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채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채당금의 수령 위임)”을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채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2호 중 “채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채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채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을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채당금”을 “대지급금”으로, “550만원”을 “1,100만원”으로, “5/100”을 “10/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10/100”을 “20/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100”을 “30/100”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0조의5의 제목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를 “관리·운용 및 출연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항, 제8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피출연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로 한다.

제22조의2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일반체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24조제2항제1호의2 중 “법 제7조의2”를 “법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로 하며, 같은 호 거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제24조제2항제5호너목(중전의 거목)부터 버목(중전의 머목)까지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너목까지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러목(중전의 더목)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제25조 중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법 제7조의3에 따른 용자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법 제7조의2”를 “법 제7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로 한다.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에 의해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삭제 <2015.6.15.>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	500만원 8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8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	법 제30조제1항제3호	

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경우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800만원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채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채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채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 ----- 채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 재정상황, 근로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 ----- --.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당금(이하 “일반채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제7조(지급대상 퇴직 근로자) ①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 ----- -----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신청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제7조의2(지급대상 재직 근로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2. 해당 사업주와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할 것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할 것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u>진정등을 제기할 것</u>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
<u>일반채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u>	<u>도산대지급금</u> -----
<u>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u>	-----
<u>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u>	-----
<u>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u>	-----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u>	-----
<u>발생한 사업주로 한다.</u>	-----.
② 근로자가 <u>소액채당금을 받을</u>	② ----- <u>간이대지급금</u> -----
<u>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u>	-----
<u>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u>	-----
<u>한다.</u>	---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	1. <삭 제>
<u>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u>	
<u>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u>	
2. <u>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u>	2. <u>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u>
<u>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u>	<u>대상이 되어 다음 각 목에 해</u>
<u>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u>	<u>당하는 날까지</u> -----
<u>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u>	-----.
<u>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u>	-----
<u>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u>	-----
<u>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u>	-----
<u>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u>	-----
<u>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u>	-----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u>
<u>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u>	<u>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u>
	<u>을 하지</u> -----

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
(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	-----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
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	-----
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
같다)이 <u>해당 근로자의 퇴직</u>	-----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u>
<u>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u>	<u>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u>
<u>을 한 경우로 한다.</u>	<u>을 한</u> -----.
<신 설>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u>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해</u>
	<u>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u>
<신 설>	나.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u>대지급금: 해당 근로자가</u>
	<u>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u>
	<u>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u>
	<u>금등 채불이 발생한 날</u>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 -----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	-----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u>판결등을 받았을 것</u>	----- <u>판결등(이하 “판결등”이</u>
	<u>라 한다)을 받았거나 법 제12</u>
	<u>조에 따라 채불 임금등·사업</u>
	<u>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u>
	<u>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u>

제9조(채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채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채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채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채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파산선고등 채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 1. 도산대지급금: ----- -----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 대지급금----- -----.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
---	--

제1호에 따라 일반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일반채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1. ~ 3. (생략) 4. 받아야 할 일반채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③ (생략)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18조(채당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 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도산대지급금----- ----- ----- ----- ----- 도산대지급금 ----- -----. 1. ~ 3. (현행과 같음) 4. ----- 도산대지급금----- -- 5. ----- 제8조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료와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 ----- -----
--	--

대지급금수급계좌

(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② 대지급금을 대

지급금수급계좌

대지급금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① 대지 급금 -----
----- 대지
급금 -----

②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
-
-
----- 대지
급급 -----
-
----- 대지급급 -----
-
-
-
-----.

1. 대지급금 -----

2.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채당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생략)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
 -- 대지급금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

 -----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

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

 -----.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
 -- 관리·운용 및 출연금의 반
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
항, 제86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피출연
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
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
 는 “회계연도”로, -----

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 ----- ----- -----.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u>채당금</u> 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 ----- <u>대지급금</u> ----- -----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일반채당금</u> 지급 청구의 수리	7. ----- <u>도산대지급금</u>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 ----- -----.
1. <u>법 제7조에 따른 채당금의 지급</u>	1. <u>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u>

1의2. <u>법 제7조의2</u> 에 따른 채불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	1의2. <u>법 제7조의3</u>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u>채당금</u> 의 입금 및 지급	3의2. ----- <u>대지급금</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u>보험료징수법</u>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5. -----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가.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가.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나.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3 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나.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다.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라. <u>보험료징수법</u>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라.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마. <u>보험료징수법</u>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마.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바. <u>보험료징수법</u>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 징수·정산	바.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사. <u>보험료징수법</u> 제22조의2 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사.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아. <u>보험료징수법</u>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확정 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 금 과납액의 반환	아.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 -----
자. <u>보험료징수법</u> 제24조제1 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 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자.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차. <u>보험료징수법</u>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 촉	차.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카. <u>보험료징수법</u> 제27조의2 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 한 전 징수	카.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타. <u>보험료징수법</u> 제28조에 따른 채납처분	타.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파. <u>보험료징수법</u>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파.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하. <u>보험료징수법</u> 제29조의2 에 따른 채납 또는 결손처	하.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분 자료의 제공 <u><신 설></u>	----- 거.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제 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너.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 -----
거. <u>보험료징수법</u> 제33조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 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 -----
너. <u>보험료징수법</u>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 수금 납입의 통지	러.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더. <u>보험료징수법</u>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 수	머.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러. <u>보험료징수법</u>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머. <u>보험료징수법</u>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 8.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8의2. <u>제9조제1항제2호</u> 에 따른 <u>소액채당금</u> 지급 청구의 수리
8의2. <u>제9조제1항제2호</u> 에 따른 <u>소액채당금</u> 지급 청구의 수리	호에 따른 <u>간이대지급금</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u>보</u>	10. ----- <u>고</u>

협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u>보험료징수법</u>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u>보험료징수법</u>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u>보험료징수법</u>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생 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u>보험료징수법</u>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u>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가.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나.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다.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11. (현행과 같음) ③ ----- 1. -----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가.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나.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다. <u>보험료징수법</u> 제16조의9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u>보험료징수법</u>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u>보험료징수법</u>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u>보험료징수법</u> 제24조제2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사. <u>보험료징수법</u>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u>보험료징수법</u>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u>보험료징수법</u>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u>보험료징수법</u>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카. <u>보험료징수법</u> 제28조에 따른 제납처분	다.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라.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마.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바.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사.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아.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자.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차.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카.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다. <u>보험료징수법</u> 제28조의3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다.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파. <u>보험료징수법</u>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파.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하. <u>보험료징수법</u> 제28조의7에 따른 채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하.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u>채당금</u>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 <u>대지</u> <u>급금</u> -----
거. <u>보험료징수법</u>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1의2. <u>법 제7조의2</u> 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2. <u>법 제7조의3</u> -----
너. <u>보험료징수법</u> 제29조의2에 따른 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1의3. ~ 4. (생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u>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u>	5. 제9조에 따른 <u>채당금</u> 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 <u>대지급금</u> -----
<u>더. 보험료징수법</u>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u>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6. 제10조에 따른 <u>채당금</u>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 <u>대지급금</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u>법 제7조</u> 에 따른 <u>채당금</u> 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25조(공단의 보고) ----- ----- <u>법 제7조</u> 및 <u>제7조의2</u> 에 따른 <u>대지급금</u> , <u>법 제7조의3</u> 에 따른 <u>용자금</u> -----		

6의2.·7. (생 략)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6의2.·7.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63